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17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유용원 · 김상훈 · 송언석  
박정하 · 김예지 · 김태호  
이달희 · 김종양 · 나경원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 투표용지는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는 등 참정권 훼손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초래한 바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에서는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감사관) ① 감사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둔다.

② 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

③ 감사관은 감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 진정·민원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0.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감사관이 작성한 매년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⑦ 감사관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임명된 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감사관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5조의6(감사관) ① 감사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둔다.</u></p> <p><u>② 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판사, 검사, 변호사</u></li> <li><u>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u></li> </ol> <p><u>③ 감사관은 감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u>에 관한 사항</li> <li><u>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u></li> <li><u>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 감사청구의 조사·처리에 관</u></li> </ol>

한 사항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 진정·민원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0.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감사관이 작성한 매년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⑦ 감사관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